



보도 일시	2023. 3. 28.(화) 10:00	배포 일시	2023. 3. 28.(화) 08:00
담당 부서 <총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책임자	과장 이상진 (044-201-7001)
		담당자	사무관 허재희 (044-201-7011)

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 공개 확대한다

- 1일 배출량 분기별 공개로 실측자료 활용 연구 등 기대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수질자동측정기기 측정자료 공개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4월 4일 공포 후 즉시(일부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폐수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기기(이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 * 처리용량 700톤/일 이상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폐수 배출량 200톤/일 이상 사업장 등
-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이러한 수질원격감시체계(Tele-Monitoring System) 관련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안했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자동측정자료 공개 범위를 ‘연간 배출량’에서 ‘일일 배출량’으로 확대하고, 공개 주기를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강화했다.

※ 공개 누리집 : 수질 TMS 배출량공개시스템(www.soosiro.or.kr/open)

- 이번 공개 주기 단축에 따라 산업계·학계 등에서 공개된 수질측정 자료(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질오염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사업장에 맞는 최적 수처리 방법 등을 개발하여 녹색 신산업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방류수 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 배출부과금 산정 기준을 종전 '3시간 평균치'에서 '24시간 평균치'로 개선했다.
 - ※ 종전에는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초과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실시
- 폐수처리공정에 주로 적용되는 '생물학적 처리' 방식의 경우 처리 과정에 장시간(10~24시간)이 소요되어, 기존 3시간 평균 수질 기준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 앞으로는 24시간 평균치로 수질을 관리하여 처리수질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세계 공통 규범*과도 발을 맞추게 된다.
 - * 동일 기준에 대해 일본은 일평균, 미국·유럽은 주·월평균 등을 적용중임
-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종전 사전 신고에서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 원료나 첨가물의 변경이 없었고 사업자 스스로 측정한 결과에서도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새로운 수질 오염물질 배출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거점소독시설*의 경우 수질오염물질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방법을 추가·확대했다.
 - *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방역을 위해 축산 관련 차량의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
- 그간 방역·소독 후 배출되는 소독수는 폐수처리업체에 위탁처리만 가능했으나, 향후에는 자체적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소독수를 처리한 후 방류할 수 있도록 했다.

-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대표자, 시설 명칭, 시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종전 사전 신고에서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 대표자, 시설 명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설 소재지 변경 시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 이번 개정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수질자동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축적된 수질 측정 자료의 활용성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경부는 관련업계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물환경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붙임 1.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2.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전·후 비교.
 3. 전문용어 설명. 끝.

담당 부서 <총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상진 (044-201-7001)
		담당자	사무관 허재회 (044-201-7011)
	수질수생태과	책임자	과 장 박판규 (044-201-7060)
		담당자	사무관 이유경 (044-201-7061)
		담당자	사무관 임옥상 (044-201-7071)
		담당자	사무관 정진호 (044-201-7075)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내용

- ① 측정기기부착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공개 확대(안 제37조제2항 및 제3항)
 - 사업장별 연간 배출량을 매년 6월 30일까지 공개하던 것을, 일 배출량을 매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공개하도록 함
- ② 측정기기부착사업장 배출부과금 산정기준 개선(안 제41조제5항, 제44조제2항제3호, 제47조제1항)
 - 기본·초과배출부과금 산정 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의 “3시간 평균치” 대신 “24시간 평균치”를 활용
- ③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사무에 배출부과금 사무 추가(안 제84조의2)
 - 배출부과금 부과를 위해서는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여 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 사무에 추가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 ① 측정기기부착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 22)
 - 자동측정 수질의 “24시간 평균치가 1회 이상”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으로 함
- ② 배출시설 신규물질에 대한 사후 변경신고 도입(안 제38조)
 - 원료·첨가물 등의 변경이 없었으나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자가측정을 이행한 경우 사후 변경신고 허용
- ③ 물놀이형 수경시설 사후 변경신고 도입(안 제89조의2)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명칭, 대표자 변경시 변경 후 2개월 이내, 소재지 변경시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 허용
- ④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의 준수사항 정비(안 별표 제19호)
 - 거점소독시설* 소독수 처리방법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직접처리·배출하는 방법 추가

* 거점소독시설 :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방역을 위해 축산 관련 차량의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

붙임 2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전·후 비교 요약

구 분	현 행	개정안	시행시기	비 고
◦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 자료 : 연간 배출량 ▶ 공개 주기 : 년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 자료 : 일일 배출량 ▶ 공개 주기 : 매 분기 	'24.1.1	
◦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방류수 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 초과 판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시간 평균치가 3회 이상 연속 초과 ▶ 1주에 10회 이상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 평균치가 1회 이상 초과 	'2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과시 개선명령,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배출부과금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시간 평균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 평균치 활용 	'2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부과금 부과
◦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의 신규 수질오염물질 배출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 신고 (신규 오염물질 확인 후 30일 이내 신고) 	공포일	
◦ 거점소독시설 설치·관리자의 소독수 처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수처리업체 위탁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수처리업체 위탁처리 ▶ 수질오염방지시설 직접 설치·처리 허용 	공포일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자의 변경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대표자 변경 : 사전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신고 	공포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변경 : 사전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공포일	

- **수질원격감시체계** : 수질 TMS (Tele-Monitoring System)
 -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배출시설의 최종 방류구에 수질자동 측정기기를 설치하여, 오염물질 배출상황을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감시함으로써 수질오염사고 예방
- **공공하수처리시설**
 -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공수역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
- **공공폐수처리시설**
 -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한 시설
- **폐수 배출시설**
 -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말하며, 사업장의 배출 규모에 따라 제1종~ 제5종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은 제1~3종 사업장임
- **수질자동측정기기**
 -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수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연속으로 계측하는 장치
- **방류수수질기준**
 -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항목별 허용기준
- **배출허용기준**
 - 폐수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항목별 허용기준
- **배출부과금**
 - (기본배출부과금) 폐수 배출시설 및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라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의 오염물질에 대해 부과하는 부과금
 - (초과배출부과금) 폐수 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오염물질량에 대해 부과하는 부과금